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학 교 체 육 진 흥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시행)됨에 따라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일부개정(법률 제17498호, 2020.10.20.공포, 2021.4.21. 시행) 및 동법 제11조 일부개정(법률 제17960호, 2021.3.23.공포, 2024.3.24.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신설함
(안 제6조2 신설)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기대회를 규정함

- 2)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
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나.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및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항 자구를 수정함

다. 부칙을 개정함.

- 1)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3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생선수 대회 참가제한) ① 법 제11조제1항의 경기대회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한 일체의 대
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말 산출성적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2. 2학기말 산출성적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 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의2.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차 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 ----- 제5항----- ----- -----.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 제5항----- ----- ----- -----.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 ----- 제2항, 제3항-----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제3항-----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학생선수 대회 참가제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한) ① 법 제11조제1항의 경기대회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한 일체의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말 산출성적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2. 2학기말 산출성적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의2.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차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 법 제11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연락처	044-203-6641